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86 발의연월일: 2024. 6. 26.

발 의 자:임오경・민병덕・한정애

한민수・박 정・김현정

서영교 • 이연희 • 임미애

강유정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법률 제 호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을 "국경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제2조(공휴일)		
호와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1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	<u>국경일</u>		
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